

이슈파워



재심사로 바뀐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결과...대법 “취소해야”

1심 “학교판단 존중”→2심 “공채공정위가 불공정 판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 공채 채용 과정에서 재심사를 거쳐 탈락한 당초 면접심사자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하게 결정된 재심사를 거쳐 나온 합격자 확정분도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모씨가 전남대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확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 공채에 응모한 황씨는 2017년 11~12월 진행된 기초심사, 전공 1·2단계 심사를 1위로 통과해 면접심사자로 선정됐으나, 면접 하루 전인 2018년 1월3일 전남대로부터 면접연기를 통보받았다. 공채 과정에 불공정 사기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전남대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

성, 재심사를 결정해 실시한 뒤 하모씨를 합격자로 확정했다. 황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채용과정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판단권을 가진 공정위가 당초 전공심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한 판단을 존중해 전남대가 재심사결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전남대는 공정위의 부당한 불공정

판정에 기초해 황씨에 대한 면접중단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위법하다”며 이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황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전남대는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황씨에게 만점을, 2·3위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지원자별 점수편차가 나머지 심사위원보다 크게 벌어졌다고 편향 문제를 주장했으나, 2심은 “편차 발생은 심사위원 재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대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음식배달원 전국 13만명...곡예운전 내몰려 年 600건 ‘쾅’

배달앱이 성행하고 배달대행업체까지 생기면서 전국 배달원 수가 1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배달 사고는 597건으로, 2016년 26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16일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 고용영향평가로 수행한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배달대행과 직접고용을 포함한 전체 배달원 수 추정치는 13만686명이다.

이는 배달앱 도입 이후 3만3640명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배달음식 시장 규모와 함께 배달대행업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원 숫자가 음식 매장당 평균 4.66명 꼴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배달원은 업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연구위원이 배달대행원 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업무 자율성(3.56점)·소득 수준(3.32점)·노동 시간(3.30점)에서는 높은 만족도가 기록된 반면, 작업 안전(2.54점)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배달원 대부분은 업무 중 소홀한 풀(주문)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배달건수 따라 소득·평균 월 240만원... ‘안전’은 위태

3년 새 9만→13만명 급증...혜택 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



받아가고, 이것이 자신의 하루 벌이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자율이나 소득 등에서 만족할 수는 있어도, 주문이 쏟아지는 식사 시간대에는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터라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배달 관련 산재 사고는 597건으로, 2016년 264건에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배달대행업 사용이 늘면서 하

루 주문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풀을 잡기 위한 배달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처럼 산재 위험에 시달리는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아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특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배달원은 전체의 61.3%에 달했다. 배달대행원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도 56.5%에 달했다.

정부는 배달대행원 급증세에도 아직 관련 공식 통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배달대행원처럼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복잡한 고용구조 상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 기존 공식 통계에는 잘 잡히지 않는다.

배달대행업 도입 이전 직접고용 형태로 일하던 배달원들은 정부 공식 통계에 집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돼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까지 비교적 잘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최근 전체 배달원 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배달대행원들은 위탁계약 등의 형태로 대행업체에 소속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김 부연구위원은 음식배달대행업체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되면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배달대행업 자체는 배달원 소득을 향상시키고 음식 자영업자의 노동 강도를 개선하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 변화가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한 ‘빈곤청년’

인권위 조사...3명중 2명 “돈 때문에 만남 피해”

절반은 식사도 걸러...우울지수 9.76 ‘심각’

일자리를 얻지 못한 ‘빈곤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들은 돈 문제로 사람을 만나기도 꺼렸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만 19~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은 사람을 만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의 66.9%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또 청년의 절반은 돈 때문에 가족의 생일을 챙기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식사를 거르기도 했다. 실태조사자의 49.6%는 가족의 생일과 같이 기념일을 챙기기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독립했지만 가난한 청년일수록 우울지수가 높

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에게서 독립했지만 가구소득이 낮은 유형’의 우울지수는 11.20점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378명)들의 45.9%가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분기한 이후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답한 청년은 13.2% 정도로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청년들의 생활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청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청년용 직업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는 73.1%의 청년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또 청년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은 경험도 8.6%밖에 없다.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선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추론된다.

경찰청장 “화성 8차사건 특진한 경찰, 문제 땀 취소 검토”

“경찰과 검찰 모두 책임”

민감통 경찰청장은 화성 8차사건의 진법 논란을 두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특진 취소)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미군통 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9년 출소했다.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를 검거한 경찰들은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의 조사과정에서 폭행

이 일어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씨를 담당한 경찰은 숨진 형사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민 청장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인데 필요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화성 8차사건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직접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경찰도 수사팀을 꾸린

상황이라 검·경 대결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은 모두 책임이 있다”며 “경찰도 재심법원에 의견서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검찰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양 기관은 과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이) 다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인원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